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급하다고 잠깐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비워주세요!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용대상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된 차량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보훈처
국가유공자

과태료 부과대상 (예시)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최대 50
만원



50
만원



200
만원

- 같은 건물에 장애인이 살지 않아도,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외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032-560-3065, 3066)로 문의바랍니다.